병역의무자(대체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대체역)]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 · 시행되면서 대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대체역의 편입부터 소집 및 소집해제, 그리고 이후의 예비군대체복무 관련 내용까지 대체역에 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대체역) 1
1. 대체역 개관 4
1.1. 대체역의 의의와 편입 4
1.1.1. 대체역의 의의 4
1.1.2. 대체역의 편입 4
1.1.3. 대체역의 편입취소 9
2.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 12
2.1.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12
2.1.1. 소집 12
2.1.2. 소집의 연기 17
2.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 21
2.2.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21
2.2.2. 보장 내용 24
2.2.3. 복무의 감면 및 종료 30
3. 예비군대체복무 36
3.1.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와 소집 36
3.1.1.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36
3.1.2.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36
3.1.3.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41

1. 대체역 개관

1.1. 대체역의 의의와 편입

1.1.1.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이란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한 병역의 일종입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

편입 대상자

▪ 대체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① 30세 이하인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② 30세 이하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또는 ③ 예비역이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입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851호)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3조].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Q.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이고, 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가요?**
>
> **A.**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①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② 특정 종교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우려와 함께, ③ 해당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냐는 반감이 더해지면서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 이에 대해 2002년 처음으로 제청된 위헌심판을 시작으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2011헌바379)을 내림으로써 “대체역”이라는 새로운 병역을 통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 이로써 대부분의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또는 “대체역”이나 “대체복무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체역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1.2. 대체역의 편입

대체역의 편입절차

편입신청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대체역으로의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편입신청자의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 신청방법

· 방 문: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제출

· 우 편: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 인터넷: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빠른 서비스 대체역 민원신청>

※ 구비서류

·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1.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3.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4.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 등 그 외의 경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본인 진술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위 4.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7.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처: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mma.go.kr/simsa/index.do) >

신청자의 변호사 조력권 등

▪ 대체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또한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회보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신청인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편입신청의 철회

▪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편입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신청인은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바로 제출하거나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 연기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체역의 편입심사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의결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부터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

▪ 또한 병무청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설치되어 7월 15일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습니다. 7월 29일에 대전에 터를 잡은 이후에는 189명의 대체역 편입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mma.go.kr/sims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

- 판사·검사·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법학·정치학·사회학·심리학·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심사절차

▪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편입신청 기한 및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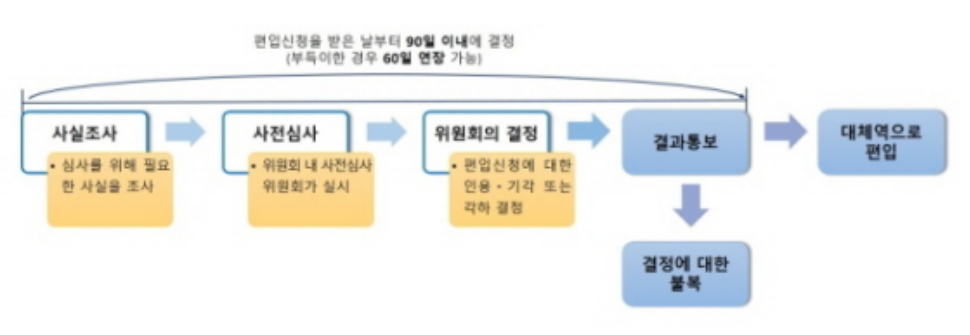
▪ 제도 시행 초기에 편입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2020년 6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편입신청한 사람의 심사기간은 90일이 아닌 24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6851호) 제4조).

▪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절차>



위원회의 결정

▪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구 분	결 정 이 유
인용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편입 처분 및 구제수단

▪ 신청인은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17조).

▪ 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mma.go.kr/simsa/index.do)-대체역 민원안내-심사절차).

1.1.3. 대체역의 편입취소

편입취소의 사유 및 절차

편입취소의 사유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는 제외함]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편입취소의 처분 절차

▪ 편입취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다음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사실 및 잔여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항).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자의로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편입취소의 결과

편입취소의 결과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들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항).

▪ 복무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편입취소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 보충역 편입 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지만, 대체역 편입취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제4호의2).

잔여 복무기간의 산정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단축되며,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잔여 복무기간 산출방법

·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위반 시 제재

허위기재 및 제출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의2).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91조의2제1항).

▪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1조의2제2항).

2.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

2.1.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2.1.1. 소집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

소집계획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의 소관 사항이며,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소집순서

▪ 소집 대상자의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이하 "별도소집대상자"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8조).

순 번		소집 대상		그룹 내 순서
별도소집대상자	1순위	28세 이상인 사람		편입일자 및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쓰는 죄를 범한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		
	2순위	소집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구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의무이행일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직접 연기하기 곤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희망시기를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3순위		그 외 소집 대상인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소집일자 본인선택

▪ 소집이 연기된 사람,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역의 별도소집대상은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항).

▪ 본인선택을 신청한 신청자는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항).

▪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되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를 포기한것으로 봅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항).

소집일자의 조정

▪ 대체역의 소집일자 조정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제10항).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2월 또는 8월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일자 조정
- 수산계 전문대학의 선박 및 통신과 졸업예정자(5학기제)는 11월 1일 이후로, 어업과 및 기관과 졸업예정자(6학기제)는 3월 1일 이후로 소집일자 조정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소집일자가 3월~7월인 경우: 그 해 8월·9월 또는 다음 해 2월·3월
  - √ 소집일자가 8월~12월인 경우: 다음 해 2월·3월
- 국외에서 장기 거주 후 귀국해서 한글 해독 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서 의무이행일자 연기
- 그 밖에 소집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 가능

▪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곤란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소집계획의 소집일시 등은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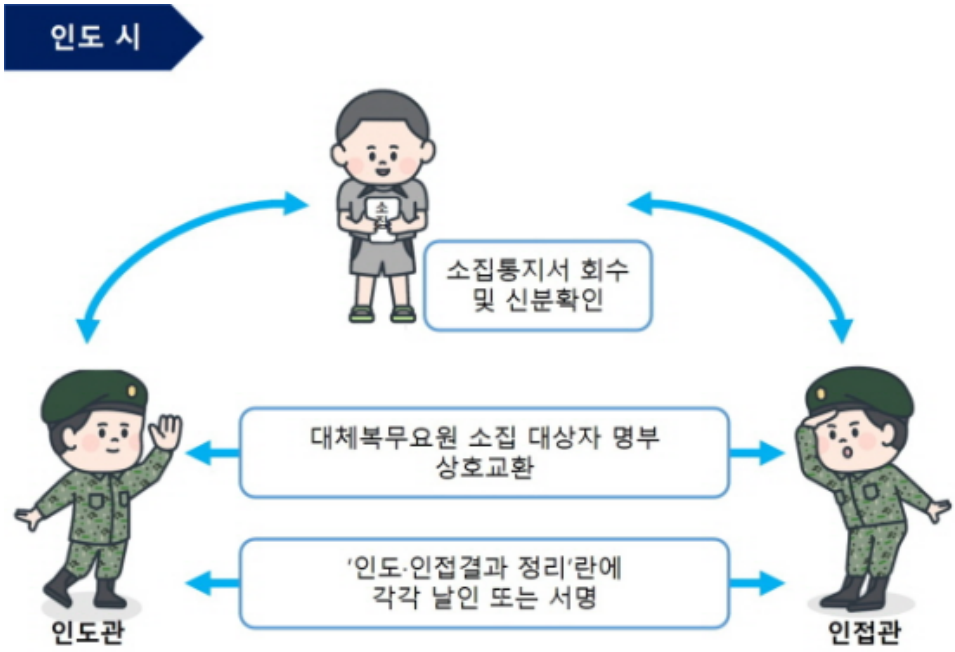
소집통지서의 전달

▪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려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소집대상자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어 대면교부,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했음에도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

소집 대상자의 인도





▪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의, 본인이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현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대체역 또한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체역은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 향상을 위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 거부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입영 또는 소집의 기피

▪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사람은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되어 수사를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소집 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응해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2항 본문).

▪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국외여행의 제한

▪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제4항).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또는 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전시·사변·동원령 선포 시 내려진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채용 시 불이익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이라면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40세까지 채용 시 불이익이 적용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판정검사 등의 기피자와 소집불응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81조의2제1항 본문).

▪ 공개 대상자에게는 공개 대상자임이 통지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최종 공개 여부는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합니다(「병역법」 제81조의2제2항·제3항).

2.1.2. 소집의 연기

의무의 연기

소집의 연기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table>
<tr><th colspan="2">연기 가능 대상</th><th>관련 절차 등</th></tr>
<tr><td rowspan="2">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td><td>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td><td rowspan="2">-</td></tr>
<tr><td>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td></tr>
<tr><td rowspan="2">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td><td>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td><td rowspan="2">-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등의
사실확인으로 연기
-영주귀국 등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td></tr>
<tr><td>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td></tr>
<tr><td colspan="2">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td><td>-별도의 절차 없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td></tr>
<tr><td colspan="2">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td><td rowspan="2">아래 표 참조</td></tr>
<tr><td colspan="2">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td></tr>
<tr><td rowspan="3">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td><td>경기단체에 등록되고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27세까지)</td><td rowspan="3">-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1.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 국가대표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나. 한국신기록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다. 상훈 수여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라.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td></tr>
<tr><td>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7세까지)</td></tr>
<tr><td>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30세까지)</td></tr>
</table>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과 인정되는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

구 분		연 령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
고등학교		28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전문대학 및 전공대학	2년제	22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대학 및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을 포함)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년제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	
대학교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대학원	석사 2년제	26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석사 2년 초과	27세	
	박사	28세	
연수기관		26세	사법연수기관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제4호).

▪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시 우선하여 소집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의무이행일의 연기

연기 대상자 및 기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 등의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①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②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채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확인서류에 관한 기준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

▪ 연기 가능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일자 연기가 제한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3항].

관련 절차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등의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난 등 다음의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1. 감염병에 걸린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법」)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게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 전단).

2.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

2.2.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담당 업무

▪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게 되며, 대체업무의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인정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와 그 밖에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대체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복무 기간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입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일수의 계산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복무의 형태 등

▪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합숙하는 형태로 복무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대체복무요원은 복무 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시 착용하는 제복·명찰·모자 등의 복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분할복무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 대체복무요원은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1부(「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이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요원은 분할복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중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에 복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그 중단기간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5항 전단).

▪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복무 중 국외여행

▪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특별휴가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교육의 종류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

▹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교육기간 등

▪ 각각의 교육은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복무이탈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

근무태만 등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6호, 제89조의3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병역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는 3회로 함]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3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대체 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 √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
  -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를 하는 경우
  - √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3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전시·사변·동원령 선포 시 내려진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채용 시 불이익

▪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이라면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이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40세까지 채용 시 불이익이 적용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2.2.2. 보장 내용

일반적 보장

학업에 대한 보장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소집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복학 가능합니다(「병역법」 제73조제1항).

▪ 소집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3조제2항·제3항).

취업 및 직장 관련 보장

▪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3세까지 연장해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봅니다(「병역법」 제74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복직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4조제1항).

▪ 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대체복무요원의 승진 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이전에 받던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은 18개월이며,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소집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3항).

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대체복무요원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7조의3제1항).

▪ 건강보험료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제외되며, 휴직 사유 등이 끝날 때까지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휴직자 등의 보험료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7조의3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항).

>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과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 관련 보장

보수의 지급

▪ 대체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복무기간	해당하는 현역병의 봉급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 대체복무요원은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으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도 제공받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휴가 보장

▪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장된 휴가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구 분	사 유	기 간
정기휴가	-	48일 이내
청원휴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직계비속은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함)	연 30일 이내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함]를 입은 경우	5일 이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함]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공가	국회·법원·공소청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한 기간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1급감염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보상 및 치료

공상 또는 질병 등의 보상

▪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무상 질병 등의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2항·제3항).

▪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구 분	근거 법률	보 상 내 용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공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재활지원, 양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재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 공상(公傷):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질병 포함)

※ 순직군경(殉職軍警):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

※ 공상군경(公傷軍警):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을 포함한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재해사망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재해부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보상금의 지급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며,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뉩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1항).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단서).

▪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재해보상금을 부담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2항).

▪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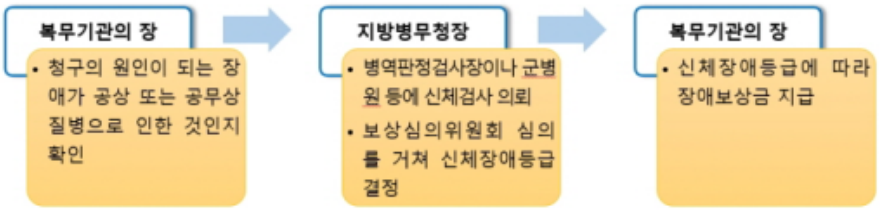
지급기준		지급액
전사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특수직무순직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39호의2서식).

▪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되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제3항).

구 분		지 급 액
전상(戰傷)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각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2.5배
특수직무공상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각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1.88배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39호의3서식).



▹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7항).

공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지원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나 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4항·제6항제1호·제2호).

▪ 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

▪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제5항 본문).

※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고충심사청구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8호서식).

2.2.3. 복무의 감면 및 종료

복무기간의 단축

가사사정으로 인한 단축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한 명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및 제133조제2항제2호).

	군인·경찰공무원	예비역·보충역 ·전시근로역·대체역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	경비교도
전사자·순직자	전몰군경·순직군인	소집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상이등급 6급 이상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포함)

※ 순직군인(殉職軍人):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

> ※ 상이(傷痍)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전사·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등(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별지 제108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병역의무의 면제·해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을 신청한 대체복무요원이 단축된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제2호).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해제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원한다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면제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내 병역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 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

-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의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해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의 처분을 함
-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의 처분을 하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함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했을 때 ① 그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②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구 분	내 용
부양의무자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피부양자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 미달인 사람
	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 및 아직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 포함)
자활가능자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입영 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내용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 전단).

▪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별지 제108호서식,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가사상황 신고서 1부
-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질병에 따른 면제·해제

▪ 대체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제7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별표3).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상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 이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 전날까지,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소집해제 처분되고, 7급 판정을 받으면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3항).

▪ 병무청장은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과 의무이행일 연기 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6항)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면제·해제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 및 제135조제8항).

-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 가족의 국외 이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증이 회수되며,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9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

-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그 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 √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한 국내 교육기관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면제·해제

▪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아직 소집되지 않은 대체역은 소집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제3호·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별지 제108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소집해제 사유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 등본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및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의무 감면의 제한

제한되는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소집면제, 해제 또는 복무기간 단축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8조제5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

√ 도망·행방묘연·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

√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한 사람

√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제한 사유에 따른 처분

-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3조제5항).
-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대체역』의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대체역의 소집-병역판정검사 및 소집-위반 시 제재>와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대체역 복무 등-대체역 복무 및 교육-위반 시 제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의 종료

소집의무가 종료되는 나이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국외 이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851호) 제2조제4항).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나이

-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이며, 병역의무를 마치면 대체역은 면역이 됩니다(「병역법」 제72조제1항).

3. 예비군대체복무

3.1.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와 소집

3.1.1.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예비군대체복무"란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입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예비군대체복무 제외 대상

▪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의2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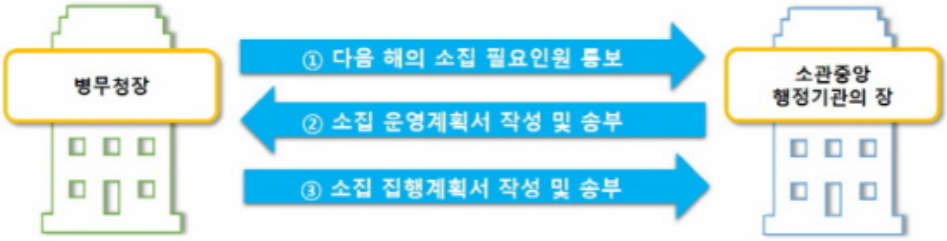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어 소집해제 된 경우
- 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3.1.2.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계획

소집계획

▪ 병무청장이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소집순서

▪ 소집 대상자의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이하 "별도소집대상자"라 한다)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table>
<tr><th colspan="2">순 번</th><th colspan="2">소집 대상</th><th>그룹 내 순서</th></tr>
<tr><td rowspan="8">별도소집대상자</td><td rowspan="4">1순위</td><td colspan="2">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td><td rowspan="8">연차,
복무만료(6년차부터 1년차 순)
소집해제일(편입일자)
및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td></tr>
<tr><td colspan="2">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td></tr>
<tr><td colspan="2">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쓰는 죄를 범한 사람</td></tr>
<tr><td colspan="2">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를 이월하여 소집해야 하는 사람</td></tr>
<tr><td rowspan="4">2순위</td><td>의무이행일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td><td>-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제61조제1항)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직접 연기하기 곤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한 사람(「병역법」 제61조제3항)</td></tr>
<tr><td colspan="2">소집기간 중 퇴소한 사람</td></tr>
<tr><td colspan="2">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3호)</td></tr>
<tr><td colspan="2">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td></tr>
<tr><td colspan="2">3순위</td><td colspan="2">그 외 소집 대상인 사람</td></tr>
</table>

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집일자·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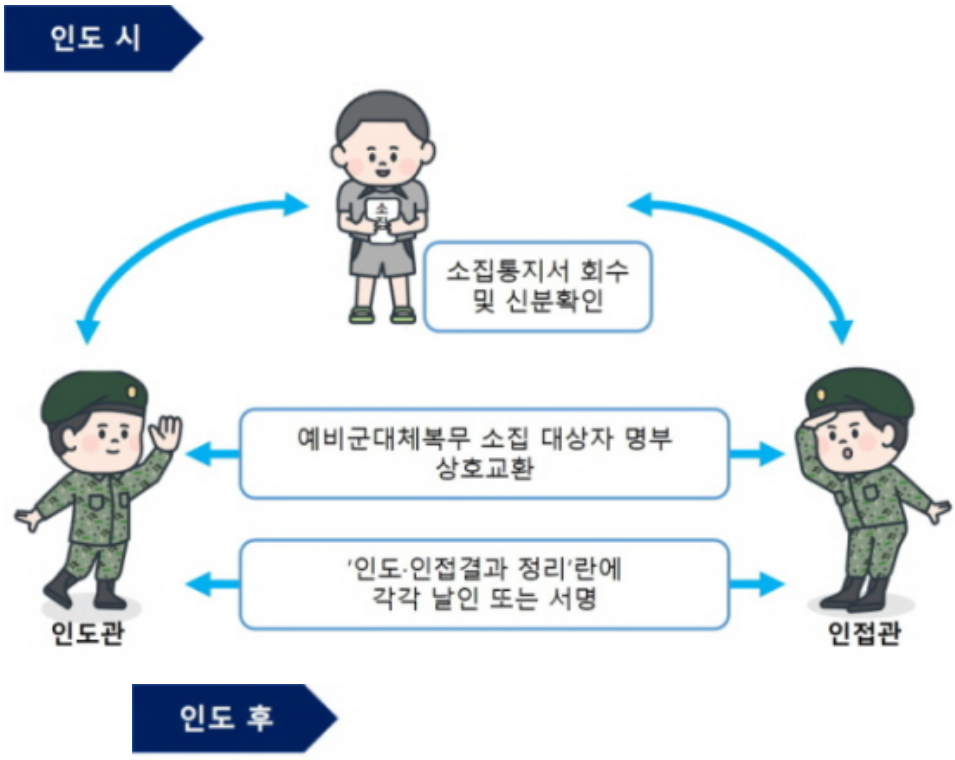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소집통지서의 전달

▪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소집대상자들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은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소집 대상자의 인도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의 지연도착은 입소 가능하나 지연도착시간만큼 보충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

소집의 연기 및 보류

소집일자 연기

▪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

▪ 정보통신망(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팩스·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한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와 같습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질병·심신장애, 시험응시 또는 주요업무수행 사유 등으로 인한 연기처리 시에는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제3항].

▪ 관할 기관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소집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연기처리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4항).

소집의 보류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학생,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신고가 없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 소집 보류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7항).

※ ´전면보류자´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부보류자´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3항).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답 경작 등)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전면·일부 보류대상 및 소집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 보류절차

▪ 소집을 보류받기 위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지 제26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본문).

▪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리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4항).

▪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하며,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소집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5항·제6항).

소집 보류의 해소

▪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그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별지 제27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본문).

▪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후 당사자에게 보류해소 사실이 통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4호라목).

▪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2항).

▸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

▸ 일부보류자: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각각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인 사람은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을 적용하여 의무부과

위반 시 제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 거부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소집의 기피

▪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소집 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응해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

3.1.3.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복무기간

▪ 예비군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며,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 4일로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소집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항,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및 제37조제1항 전단).

▸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의 연차: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연차: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1항 후단).

▪ 소집을 위한 인도·인접 후에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소집기간에서 4시간이 공제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소집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서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 ※ 잔여복무기간의 계산

· 훈련시간: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의 훈련시간

복무의 내용

▪ 예비군대체복무의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므로,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장 또한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복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 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와 그 밖에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역 및 예비군대체복무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46조제1항).

-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보장 내용

학업 및 직장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3제2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4).

실비 및 여비의 지급

▪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고,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릅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 만약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의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

보상 및 치료

▪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중(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공상(公傷)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무상 질병 등의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2항·제3항).

▪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구 분	근거 법률	보 상 내 용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공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재활지원, 양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재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 사이트 『대체역』의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 대체역 복무 등 – 보장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집해제

소집의 해제

▪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이 해제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 연차별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3박 4일)이 만료된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소집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